

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및 계약 일정 안내

■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(당첨)유형별 자격검증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(※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)
제출기한	2021. 12. 20. (월) ~ 2021. 12. 24. (금) 10:00 ~ 17:00까지
제출장소	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견본주택 ※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
자격검증 서류	특별공급 유형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따라 자격검증 서류가 상이 하오니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	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,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(계약체결 이전)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■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

당첨 동·호수의 공급금액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				
체결기간	2021. 12. 28. (화) ~ 2021. 12. 30. (목) 10:00 ~ 16:00까지				
체결장소	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견본주택 ※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				
구비서류	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유의사항	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

■ 계약 시 구비서류

	서류유형					
구분		추가	해당서류	발급	확인 및 유의사항	
	필수	해당 자		기준		
	0		계약금 입금 증빙서류		APT 및 유상옵션 계약금 10%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	
	0		주민등록증		운전면허증 또는 여권	
	0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계약용 (본인 발급용) ※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	
	O 인감도장 O 복무확인서		인감도장	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	
공통			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. (10년 명시)			
		0	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	케다다	※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	
		0	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	해당자	※ 납구내경시 시작확인시규 세출기인 내 세출인 경구 세외 	
제3자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(본인 발급용)	
계약시	0		주민등 록증 , 인장	대리인	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	

인지세 납부 안내

■ 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 [관련법령] 인지세 법 제1조,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

●과세대상 :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

●과세세액: 15만원

●납부기한 및 방법: [공급계약]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분양계약전 수입인지 구매 방법

●분양계약 진행시 필수 서류이며 구매방법 확인 후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.

●수입인지 구입처

-온라인 구매처 : 수입인지사이트[www.e-revenuestamp.or.kr] 전자수입인지 구매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 -오프라인 구매처 : 우체국,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(구비서류:신분증 / 현금결제가능, 카드결제불가)

■ 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 * [관련법령]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

●3개월 이내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100%

●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200%

●6개월 초과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300%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

(1) www.e-revenuestamp.or.kr 접속





(4) 납부정보입력

①용도: 인지세납부

②과세문서 종류 :

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
③금액: 150,000원

④건수: 1건

⑤확인 및 납부

일반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



서류	유형						
필수	추가 (해당 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
0	-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			
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			
0		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			
0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			
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		
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, 세대원	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			
Ο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			
	Ο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		
	0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피부양 직계존속이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			
	0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아니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			
	0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			
	0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		
	0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			
	Ο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		
	0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·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	
	0	당첨사실소명서류	본인	당첨사실 소명서류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)			

[※]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[※]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[※]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신혼부부)



서류	류유형							
필수	추가 (해당 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
Ο	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				
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				
0		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				
0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				
Ο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			
Ο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, 세대원	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				
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				
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			
0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				
0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(상세)	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[※ 건강(의료)보험증이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]				
0		소득증빙서류	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표1참조)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) •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				
	0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				
	0	기본증명서 (상세)	자녀	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				
	0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·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 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				
	Ο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				
	0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				

[※]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[※]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[※]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	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
근로자	일반근로자	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 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, 세무서
ᆫᆇᄭ	신규취업자	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
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*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	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
자영업자	신규사업자	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,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
	법인사업자	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등기부등본	* 세무서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	* 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* 수급자 증명서	* 동사무소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	* 해당직장
	무직자	* 비사업자 확인 각서	* 계약시 작성

■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

·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
해당자격	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*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	* 해당 직장,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
자영업자	*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	*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

■ 자산보유기준

구	분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
				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 당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	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				
		건		건축물 종류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
		축	주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
		물	ㅜ 택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				
					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
	3억 3,100 만원 이하			주택 외	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
부동산			• 토지:	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	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 개별				
(건물+		만원	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						
			- 「농	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	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				
토지)			하는	-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	등재된 경우				
		· · · 토	토 지	사림	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 남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 ·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시				
			되가	H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O	·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 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				
				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ㅂ '나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	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 				

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생애최초)



서류	유형					
필수	추가 (해당 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
0	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		
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		
0		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		
Ο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		
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	
Ο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, 세대원	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		
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		
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	
Ο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혼인사실여부확인		
O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		
	0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자녀	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		
	0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	비사업자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		
	0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	

[※]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[※]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[※]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7	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
근로자	일반근로자	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 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, 세무서
근도시	신규취업자	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
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*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	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
자영업자	신규사업자	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,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
	법인사업자	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등기부등본	* 세무서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	* 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* 수급자 증명서	* 동사무소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	* 해당직장
	무직자	* 비사업자 확인 각서	* 계약시 작성

■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

·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
해당자격	제출서류	발급처
 근로자	*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	* 해당 직장, 세무서,
	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	건강보험공단
자영업자	*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,	*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
710B71	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	MIN, 282882

■ 자산보유기준

구	분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
구 부동산 (건물+ 토지)	불 3억 3,100 만원 이하	건축물	지자체경 주 택 • 토지크 공사 - 「농	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음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단독주택 주택 외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내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등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	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 경우는 제외 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				
		지	- 공부 - 종준 되가 • 건축됨	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(

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다자녀가구)



서류유형				
필수	추가 (해당 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0	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
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0		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
0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
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, 세대원	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
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0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Ο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0		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
	О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0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
	0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여성가족부의 「 한부모가족 지원법 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0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·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О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	0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
[※]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노부모부양)

서류유형				
필수	추가 (해당 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0	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
Ο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0		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
0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
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, 세대원	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
Ο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0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0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
	0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0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0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[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]
	0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자녀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
[※]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기관추천)



서루	류유형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추가 (해당 자)			
0	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접수 장소에 비치
0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0		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
0		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
0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0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, 세대원	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
0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0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0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0	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	본인	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
[※]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